

취 하 증 명 원

사 건 2000다000 대여금 상 고 인(원고) 000 피상고인(피고) <

위 당사자간의 귀원 20○○다○○○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. 00. 00.

위 상고인(원고)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대법원 제○부(○) 귀중

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상소